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 고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2.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민 불가)
-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 ~ 2004. 12. 31. 출생자
-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라·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1·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후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후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총인원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7,000	154	128	192	227	307	269	334	313	260	244	339	346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41	289	274	412	285	211	275	296	458	212	282	354	298

※ 배분기준 : 최근2년 경쟁률 40%, 자치구별 청년인구 50% · 저소득 인구 10% 반영('22년 2월말 기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기간 이전 5. 23. ~ 6.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4.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성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선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 4. (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 ※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 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2년(또는 3년)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붙임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붙임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연번	자치구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1	종로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148-2485
2	중구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3396-5314
3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99-7072
4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286-5022
5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450-7494
6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27-5034
7	중랑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094-1637
8	성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2241-2496
9	강북구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901-6664
10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091-3022
11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116-3628
12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51-7014
13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30-1863
14	마포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3153-8807
15	양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2620-3341
16	강서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2600-6783
17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860-2299
18	금천구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2627-1353
19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2670-3946
20	동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820-9703
21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879-5856
22	서초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55-8349
23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3423-5793
24	송파구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2147-2704
25	강동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3425-5702